

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소재지		

「디지털포용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(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합니다) 2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	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수탁기관